

자산보관 • 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를 자산보관•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8963/0991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 이스트스프링 글로벌 리더스 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증권형[주식] 집합투자기구

다. 보관 • 관리기간: 2011.08.24 - 2012.08.23

라. 집합투자업자: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(주)

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교보증권, 신한금융투자, 한국투자증권, 대신증권, 대우증권, 신영증권, 유진투자증권, 메리츠종합금융증권, 현대증권, 한화투자증권, 동양증권, SK증권, 엔에이치농협증권, 삼성증권, 동부증권, 메릴린치증권서울지점, 키움증권, 하나대투증권, 아이비케이투자증권, 이트레이드증권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, 국민은행, 외환은행, 홍콩상하이은행, 수협중앙회, 대한생명, 삼성생명, 피씨에이생명보험, 대구은행, 경남은행, 부산은행

2.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12.02.14	제1조(신탁계약의 목적)	투자신탁의 설정,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PCA자산운용과 신탁업자인 홍콩상하이은행서울지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와 신탁업자인 홍콩상하이은행서울지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2012.02.14	제2조(용어의 정의)	3. <생략>, 이 신탁계약에서는 “PCA 글로벌 리더스 증권자투자신탁 제1-1호[주식]”를 말한다.	3. <생략>, 이 신탁계약에서는 “이스트스프링 글로벌 리더스 증권자투자신탁[주식]”를 말한다.
2012.02.14	제3조(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)	① 투자신탁의 명칭은 “PCA 글로벌 리더스 증권자투자신탁 제1-1호[주식]”라 한다.	② 투자신탁의 명칭은 “이스트스프링 글로벌 리더스 증권자투자신탁[주식]”라 한다.

		②<생략> ③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PCA 글로벌 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 제1-1호[주식] <생략>	②<현행과 같음> ③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이스트스프링 글로벌 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<생략>
--	--	---	---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- 해당사항없음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·해임에 관한 사항

변경전				변경일	변경후			
회계 감사인명	계약 기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		회계 감사인명	계약 기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
안진회계법인	1년	176만원	서면계약	-	-	-	-	-

*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, 위에 명기된 회계감사인보수 금액은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지급되는 보수 금액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.

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☐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
- 부합함

☐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절한지 여부

- 적정함

☐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절한지 여부

- 해당사항없음

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
- 공정함

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
- 적정함

☐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
- 해당사항없음

☐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
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